

붙임 4.

□ 「기술용역 공무원 직접시행 제도」 대상기준

○ 공통 사항

- 전문기술을 요하지 않는 단순·반복 작업이 주공정인 소규모 설계
- 설계도면 불필요 기술검토 용역(보수·보강 공법 선정 등)은 자체 기술자문위원회나 외부 (디자인)전문가 적극 활용
- 정부 표준 도면 또는 기존 용역성과(설계) 등을 활용 가능한 설계용역
- 기본설계 사양이 제공되는 기계설비 등 시설물 제작·구매 설치공사
- 도시계획선, 토지보상 등의 정밀조사를 요하지 않는 측량용역은 수치지형도 활용
- 주택·소규모 시설물의 관련자료(건축물 관리대장·도면)이용 가능한 철거공사
- 전문업체의 견적에 의한 개략적인 설계로 시공가능한 체육시설·전망대 인조데크 등의 설치공사
- 기타 필요시 교통조사, 측량, 토질조사 등은 별도 용역 시행
 - ※ 디자인심의, 정밀안전진단 등 별도의 전문기술 필요시 외부 용역 시행

○ 분야별 사항

[도로분야]

- 도로의 종횡단 선형 변경이 없는 도로포장 또는 단순 도로확장 설계
- 단순 구조물 설치를 수반하는 이면도로의 개설 또는 정비공사
- 재래식 흡음방음벽 및 관련업체의 기본설계자료가 제시되는 방음벽 공사
- 차선도색, 도로시설물 설치, 포장면 보수 등 도로유지보수공사
- 보도확장 및 신설, 보도블럭 교체 등 보도정비공사

[시설물 유지관리 분야]

- **전회 점검결과 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인 시설물 중 2년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이 계획된 시설물의 정밀점검**
- 기타 손상부의 위험요소가 경미하여 용역에 의한 정밀점검이 필요치 않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의 정밀점검
 - ※ 자체 점검의 기술적 보완 필요 시 외부전문가 합동 시행
- 교량·터널·암거·공동구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일상유지보수공사
-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결과 보수·보강 공법이 제시된 시설물 유지보수

[상수도 분야]

- 가시설공사가 수반되지 않는 송배수관 신설 및 개량공사
- 기술개발업체로부터 설계기본자료가 제시되는 비굴착 갱생공사
- 배수지·정수장·취수장 등 시설물의 일상유지보수공사
- 정밀안전진단(점검) 결과 보수·보강공법이 제시되는 시설물의 보수·보강공사
- 배수지·정수장·취수장 등 시설물·건축물 방수공사

[하수도 분야]

- 하수암거내 퇴적토 준설 및 일상유지보수공사
-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용역 결과 보수·보강 공법이 제시되는 하수암거 보수공사
- 가시설공사가 수반되지 않는 하수관 개량 및 신설공사
- 정부 표준설계도 또는 기존 설계도 활용이 가능한 소규모 암거 또는 맨홀설치
- 기술개발업체로부터 설계 기본자료가 제시되는 비굴착 하수관 개량공사
- 기본설계자료가 제공되는 조립식(PC 제품) 암거설치공사
- 빗물 펌프장 구조물 및 시설물 등의 일상유지보수공사